

대구예술대학교 교과과정개편위원회규정

(제정 2001.03.01. 교무위원회)

(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9.06.20. 교무위원회/자구수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과과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교과과정개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개정 2010.8.2)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과과정 편성과 개편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제6조 (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